

목적물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재물기타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직업인으로 행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억원	15년/15년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15년/15년

담보별 상세 내용

[음식물배상책임Ⅲ] 음식물배상책임_자기부담금:5만원 / 음식물배상업종:제과점,휴게실등 / 매출:30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_요양시설전문인수:13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업종코드:주.야간보호시설 /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_자기부담금:50만원 /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유형코드:1사고당 1억원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_수용인원수:56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_자기부담금:100만원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유형코드:1인당 3천만,1사고당 3억 / 노인요양시설배상책임업종코드:주.야간보호시설

피보험자



예약담보



년/월지급형담보



면책기간유

피보험자	최소라(750603-2*****) 49세 여 1급 사회복지사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계약자와의 관계	임직원	사망외수익자	최소라(750603-2*****)
피보험자주소	(직장)(11444) 경기 양주시 평화로***** **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25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행정1심합의사건, 행정1심단독사건/항소심:행정항소사건/상고심:행정상고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보상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2천만원	15년	15년 2024-01-15~ 2039-01-15
26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민사1심합의사건, 민사1심단독사건, 민사소액사건/항소심:민사 항소사건/상고심:민사상고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약관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따름)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자세한 내용 약관참조	2천만원	15년	15년 2024-01-15~ 2039-01-15

보험료 할인 상세

할인명	적용대상	할인내용
-----	------	------

바탕의 KB손해보험 로고가 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사 장대표이사
사 장

목적물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집기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실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억원	15년/15년
	구내폭발파열위험(실손)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실손보상	1억원	15년/15년
시설	화재손해(실손)(기본계약) 보험기간중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 손해발생시 실손보상 ※단,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및 차에 실는 비용 발생시 실손보상 ※단, 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며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억원	15년/15년
	구내폭발파열위험(실손)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실손보상	1억원	15년/15년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화재손해(약관참조: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등)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목적(시설)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재조달차액 (약관참조:재조달가액에서 보험가액을 뺀 금액)을 지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 통지해야 함	1천만원	15년/15년
재물기타	화재배상책임 II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사망시 한도 : 피해자 1인당 대인 가입금액,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 계약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사고 부상 및 대물사고 보상에 대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	대인 1억5천만원 (대인 : 1사고당무한) 대물 20억원	15년/15년
	음식물배상책임 III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단,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6.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15년/15년